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	2017 ~
번호	2017 ~

발의일자	2017. 5.	
발 의 자	박희순의원외	명

1. 제안이유

○ 거창군 장남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위치(안 제3조)
- 라. 운영 및 기능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마. 회원 등록 및 의무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바. 연회비 납부 및 반환, 면제(안 제8조, 안 제9조)
- 사. 이용제한(안 제10조)
- 아. 회원 등록 취소(안 제11조)
- 자. 대여기간 및 수량 등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 및 「지방자치법」제9조, 제22조, 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나. 예산조치: 2017년 450백만원 확보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복지정책과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: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7. . . ~ . .
 - (나) 예고결과:
 - (4) 비용추계서: 붙임
 - (5) 성별영향분석: 반영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거창군 장난감은행"이란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 등(이하 "장난감등"이라 한다)을 주민에게 대여하거나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2. "영유아"란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- 3. "보호자"란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.

제3조(위치) 거창군 장난감은행(이하 "장난감은행"이라 한다)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.

제4조(운영)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·관리한다.

- ② 군수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
- ③ 군수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(이하 "장난감은행 운영규정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능)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, 대여 및 관리
- 2.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
- 3.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제6조(회원 등록)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연회비 납부 및 반환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은 매년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 - 1. 제11조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경우
 - 2.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 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른 연회비의 반환기준 및 절차 등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- 제9조(연회비의 면제) 군수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3.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 - 4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
 - 6.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
 -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제10조(이용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은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장난감등 또는 장난감은행의 시설물·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
 - 2.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
 - 3. 그 밖에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제11조(회원 등록 취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
 - 2. 회원이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 - 3. 장난감등을 분실· 훼손·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 - 5. 다른 사람의 계정(아이디)이나 비밀번호,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 - 6.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.
- 제12조(대여 기간 및 수량 등) 장난감등의 대여 기간과 수량,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